

영등포구의회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7. 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朴 鍾 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38호로 2012년 6월 2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제명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
- 다. 영등포구, 사업자, 주민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5조 ~ 안 제7조)
-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 신설(안 제8조)
- 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 명시(안 제9조)

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제18조, 제19조, 안 제21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0. 7. 23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2010. 12. 22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과 “발생억제 시책 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준칙안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를 초기단계부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구청, 주민, 사업자 각 주체별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 안 제7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발생억제를 위한 홍보와 지도·권고, 발생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 대하여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 계획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8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9조).

- 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 마.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여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종량제 시행, 감량의무이행계획 및 적정 재활용 등 이행여부에 따른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함(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 현행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구청과 주민, 사업자 등 각 주체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후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 발생억제를 위한 정책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점점 심각해져가는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서울시 자치구 조례 개정 현황 : 서울시, 중구 외 14개 자치구

관 련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0.7.23>